|  |  |  |
| --- | --- | --- |
| **도시 배수관라인 오수 배출**  **허가관리방법**  주택도농건설부 령 제21호  《도시 배수관라인 오수 배출 허가관리방법》이 제20차 부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지금 발표하니,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도농건설부 부장 천정가오(陳政高)  2015년 1월 22일  **제1장 총 칙**  **제1조** 도시 배수관라인에 오수를 배출하는 데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배수관 및 오수처리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며, 도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도시 배수 및 오수처리 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배수관라인 오수배출 허가(이하 "배수허가"로 약칭)를 신청하는 경우와, 공업, 건축업, 요식업, 의료 등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 및 개인사업자(이하 "배수자")가 도시 배수시설에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문이 전국의 배수허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책임진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문이 관할 행정구역내 배수허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책임진다.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주관부문(이하 "도시배수 주관부문"으로 약칭)이 관할 행정구역내 배수허가증서의 발급 및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도시배수 주관부문은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배수허가 심사허가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제4조** 도시 배수시설 도달범위 내에서 배수자는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오수를 도시 배수시설에 배출해야 한다. 배수자가 도시 배수시설에 오수를 방출하는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배수허가증 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배수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배수자는 도시 배수시설에 오수를 방출할 수 없다. 도시 주민이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경우는 배수허가증 수령을 신청할 필요 없다.  빗물과 오수를 분리 배출하는 지역에서는, 오수를 빗물 파이프라인에 배출할 수 없다.  **제5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공동으로 법에 따라 오수배출 중점관리대상 배수자 명단을 확정하여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2장 허가신청 및 심사**  **제6조** 배수자는 소재지 배수주관부문에 배수허가증 수령을 신청한다.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집중관리 건축물 또는 단위 내 다수의 배수자가 존재하는 경우, 재산권을 보유한 단위 또는 그 단위가 위탁한 관리사무 서비스기업이 통일적으로 배수허가증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허가증 수령 단위는 배수자의 배수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각종 시공 업무에서 배수가 필요한 경우, 건설 단위가 배수허가증을 신청한다.  **제7조** 배수허가증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1) 배수허가신청서  (2) 배수자 내부 배수관라인, 전용 검측계량기, 오수 배출구 위치 및 구경에 관한 도면 및 설명 등 자료  (3) 규정에 따라 오수 예비처리시설을 건설한 데 따른 관련자료  (4) 배수관은폐공정 준공보고서  (5) 배수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계량인증 자질을 가진 수질검측기구로부터 발급받은 배수 수질·수량 검측보고서, 오수배출예정 배수자가 제출한 수질·수량 예측보고서  (6) 중점관리대상 단위명단에 열거된 배수자는 주요 오수·오염물 배출 자동검측설비를 이미 설치한 데 관한 자료 추가 제출  (7)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자료  **제8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배수허가증을 발급한다.  (1) 오수 배출구 설치가 도시 배수 및 오수처리 규획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2) 배출되는 오수 수질이 국가 또는 지방의 도시하수도 오수배출 수질표준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3)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예비처리시설이 건설된 경우  (4)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배출구 설치 위치가 샘플 추출 및 수량 계량을 위해 전용검측계량기 및 계량설비 설치하는데 용이한 경우, 중점관리대산 단위명단에 열거된 배수자가 주요 오염물 배출 자동모니터링 설비를 이미 설치한 경우  (5)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시공 작업과정에서 배수가 필요할 경우, 건설단위는 기존에 건설된 예비처리시설을 재건해야 하고, 배수가 본 조 제1관 및 제2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배수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시공 작업과정에서 도시 배수시설에 배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배수허가증 유효기간은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배수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단 시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배수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오수를 배출해야 하는 경우, 배수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도시 배수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5년이다.  배수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배수자가 엄격하게 허가 내용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였고 또한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배수자가 연장을 신청할 때 원 허가기관의 동의를 거쳐 심사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배수허가증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배수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배수구 수량과 위치, 배수량, 오염물 항목 또는 농도 등 배수허가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배수자는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배수허가증 수령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배수자 명칭, 법정대표자 등 기타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배수자는 공상등기 변경 후 30일 이내에 도시 배수주관부문에 변경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제3장 관리 및 감독**  **제12조** 배수자는 배수허가증에서 확정된 배수 종류, 총량, 시한, 배수구 위치와 수량, 배출되는 오염물 항목과 농도 등 요구에 따라 오수를 배출해야 한다.  **제13조** 배수자는 아래 열거된 도시 배수시설 안전 위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도시 배수시설에 독극물, 휘발성 폭발물질, 부식된 폐기액체 및 폐기물 찌꺼기, 유해가스와 요리 폐유·연기 등을 배출하는 행위  (2) 도시 배수시설을 막히게 하거나, 도시 배수시설에 쓰레기, 모래찌꺼기, 시공용 시멘트가 섞인 액체, 기름, 진흙 등 막히기 쉬운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무단으로 도시 배수시설을 철거, 이동하거나 파헤치는 행위  (4) 무단으로 도시배수시설에 수압을 높여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제14조** 사고 또는 돌발사건으로 인해 배수자가 배출한 오수가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시설의 안전운행에 위험을 끼치게 된 경우, 즉시 배출을 중단하고 위험 축소조치를 취하면서, 규정에 따라 제 시간에 도시 배수주관부문 등 유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배수자의 배출구 설치, 파이프라인 연결, 예비 처리시설 및 수질·수량 모니터링시설 건설 및 운행에 관해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16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배수허가 자료를 업체별로 정리하여 당안으로 보관하고, 배수자 당안에 대한 정보화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제17조** 계량인증자질을 갖춘 배수 모니터링기구가 도시 배수주관부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정기적으로 배수자가 배출하는 오수의 수질, 수량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배수 모니터링 당안을 작성해야 한다. 배수자는 모니터링을 받아들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 단위명단에 열거된 배수자는 법에 따라 수질오염물 배출 자동 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하고 이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 단위명단에 열거된 배수자가 수질오염물 배출 자동 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할 때, 환경보호 주관부문의 감시통제설비와 연결되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도시 배수주관부문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의 감시통제 설비와 연결되지 않은 가운데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이미 자동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면,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공유할 수 있다.  **제18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법률·법규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배수자의 오수 배출 현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감독·검사 시행시 아래 열거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1) 현장에 진입해 검사하고 모니터링한다.  (2) 감독·검사 대상 배수자에게 배수허가증 제시를 요구한다.  (3) 관련 문건과 자료를 열람하고 복제한다.  (4) 감독·검사 대상 단위와 개인에게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5) 법에 따라 배수자가 도시 배수시설에 오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관련 법률·법규와 본 방법 규정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한다.  감독·검사 대상 단위와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는 감독·검사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도시 배수주관부문으로부터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배수허가 심사, 당안 관리, 배수자 배수행위에 대한 감독·지도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도시 배수주관부문과 협조하여 배수허가에 관한 감독·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허가기관 또는 그 상급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배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시 배수주관부문 업무인력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여 배수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2)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배수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3)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배수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4)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에게 배수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5) 법에 따라 배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배수자가 사기, 수뢰 등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통해 배수허가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  **제21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배수허가 말소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1) 배수자가 법에 따라 활동을 종료한 경우  (2) 배수허가가 법에 따라 취소, 철회되거나 배수허가증이 폐기된 경우  (3) 배수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4) 법률, 법규에 규정된 배수허가증을 말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22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감독·검사 상황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도시 배수주관부문 및 그로부터 위탁받은 전문기구, 배수 모니터링기구의 업무인원은 감독·검사 대상 단위 및 개인의 기술과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를 가진다.  **제23조**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배수허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배수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는 도시 배수주관부문 예산에 산입하여 해당 급 정부 재정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비준된 예산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4조**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을 가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인원은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본 규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자에게 배수허가를 내준 경우  (2) 본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자에게 배수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간 내에 허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3) 직무상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거나 기타 이익을 추구한 경우  (4) 감독·검사 대상 단위와 개인의 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5) 법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엄중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  **제25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시설 도달범위 내에서 국가 유관규정에 따르지 않고 배수시설에 오수를 배출하거나, 빗물과 오수가 분리되는 지역에서 오수를 빗물 파이프라인에 배출한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엄중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해당 단위에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개인에게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제26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자가 배수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도시 배수시설에 오수를 배출한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위법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시설을 정비하여 배수허가증을 신청토록 명하며, 5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점관리대상 단위명단에 열거된 배수자에 대해서는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며,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배수자가 배수허가증 요구에 따르지 않고 도시 배수시설에 오수를 배출한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위법행위 중지 및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엄중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배수허가증을 폐기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중점관리대상 단위명단에 열거된 배수자에 대해서는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사항을 동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통보하며, 사회에도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8조** 배수자 명칭, 법정대표자 등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데 본 방법 규정된 시한 내에 도시 배수주관부분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3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 배수자가 사기, 수뢰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배수허가를 취득한 경우 3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배수자가 사고 및 기타 돌발사건으로 인해 오수를 배출하여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시설의 안전한 운행에 위험을 끼친 상황에서,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을 즉시 중지하면서 동시에 위험 제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도시 배수주관부문에 제 시기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3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배수시설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활동에 종사한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위법행위 중단과 기한 내 원상회복 및 기타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 경고를 준다. 기한 내에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엄중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단위에 대해서는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2조** 배수자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수질·수량 모니터링을 거부하거나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감독·검사하는 것을 방해·저지한 경우, 도시 배수주관부문은 경고를 준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3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5장 부 칙**  **제33조** 배수허가증은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분이 양식을 제정하고, 성·자치구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문과 직할시 인민정부 도시 배수주관부문이 인쇄를 담당한다.  배수허가 신청서는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문이 추천 양식을 제정하고, 직할시·시· 현 인민정부 배수 주관부문이 이를 참조하여 인쇄한다.  **제34조** 본 방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 배수허가 관리방법》(건설부 령 제152호)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  | **城镇污水排入排水管网**  **许可管理办法**  住房和城乡建设部令第21号  　　《城镇污水排入排水管网许可管理办法》已经第20次部常务会议审议通过，现予发布，自2015年3月1日起施行。  　　　　　　　　　　　　　　　　　住房城乡建设部部长　陈政高  2015年1月22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对污水排入城镇排水管网的管理，保障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安全运行，防治城镇水污染，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城镇排水与污水处理条例》等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申请污水排入排水管网许可（以下称排水许可），对从事工业、建筑、餐饮、医疗等活动的企业事业单位、个体工商户（以下称排水户）向城镇排水设施排放污水的活动实施监督管理，适用本办法。  **第三条**　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负责全国排水许可工作的指导监督。  　　省、自治区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排水许可工作的指导监督。  　　直辖市、市、县人民政府城镇排水与污水处理主管部门（以下简称城镇排水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排水许可证书的颁发和监督管理。城镇排水主管部门可以委托专门机构承担排水许可审核管理的具体工作。  **第四条**　城镇排水设施覆盖范围内的排水户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将污水排入城镇排水设施。排水户向城镇排水设施排放污水，应当按照本办法的规定，申请领取排水许可证。未取得排水许可证，排水户不得向城镇排水设施排放污水。城镇居民排放生活污水不需要申请领取排水许可证。  　　在雨水、污水分流排放的地区，不得将污水排入雨水管网。  **第五条**　城镇排水主管部门会同环境保护主管部门依法确定并向社会公布列入重点排污单位名录的排水户。  **第二章　许可申请与审查**  **第六条**　排水户向所在地城镇排水主管部门申请领取排水许可证。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决定。  　　集中管理的建筑或者单位内有多个排水户的，可以由产权单位或者其委托的物业服务企业统一申请领取排水许可证，并由领证单位对排水户的排水行为负责。  　　各类施工作业需要排水的，由建设单位申请领取排水许可证。  **第七条**　申请领取排水许可证，应当如实提交下列材料：  （一）排水许可申请表；  （二）排水户内部排水管网、专用检测井、污水排放口位置和口径的图纸及说明等材料；  　　（三）按规定建设污水预处理设施的有关材料；  　　（四）排水隐蔽工程竣工报告；  　　（五）排水许可申请受理之日前一个月内由具有计量认证资质的水质检测机构出具的排水水质、水量检测报告；拟排放污水的排水户提交水质、水量预测报告；  　　（六）列入重点排污单位名录的排水户应当提供已安装的主要水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有关材料；  　　（七）法律、法规规定的其他材料。  **第八条**　符合以下条件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核发排水许可证：  　　（一）污水排放口的设置符合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的要求；  　　（二）排放污水的水质符合国家或者地方的污水排入城镇下水道水质标准等有关标准；  　　（三）按照国家有关规定建设相应的预处理设施；  　　（四）按照国家有关规定在排放口设置便于采样和水量计量的专用检测井和计量设备；列入重点排污单位名录的排水户已安装主要水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  　　（五）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施工作业需排水的，建设单位应当已修建预处理设施，且排水符合本条第一款第二项规定的标准。  **第九条**　排水许可证的有效期为5年。  　　因施工作业需要向城镇排水设施排水的，排水许可证的有效期，由城镇排水主管部门根据排水状况确定，但不得超过施工期限。  **第十条**　排水许可证有效期满需要继续排放污水的，排水户应当在有效期届满30日前，向城镇排水主管部门提出申请。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在有效期届满前作出是否准予延续的决定。准予延续的，有效期延续5年。  　　排水户在排水许可证有效期内，严格按照许可内容排放污水，且未发生违反本办法规定行为的，有效期届满30日前，排水户可提出延期申请，经原许可机关同意，可不再进行审查，排水许可证有效期延期5年。  **第十一条**　在排水许可证的有效期内，排水口数量和位置、排水量、污染物项目或者浓度等排水许可内容变更的，排水户应当按照本办法规定，重新申请领取排水许可证。  　　排水户名称、法定代表人等其他事项变更的，排水户应当在工商登记变更后30日内向城镇排水主管部门申请办理变更。  **第三章　管理和监督**  **第十二条**　排水户应当按照排水许可证确定的排水类别、总量、时限、排放口位置和数量、排放的污染物项目和浓度等要求排放污水。  **第十三条**　排水户不得有下列危及城镇排水设施安全的行为：  　　（一）向城镇排水设施排放、倾倒剧毒、易燃易爆物质、腐蚀性废液和废渣、有害气体和烹饪油烟等；  　　（二）堵塞城镇排水设施或者向城镇排水设施内排放、倾倒垃圾、渣土、施工泥浆、油脂、污泥等易堵塞物；  　　（三）擅自拆卸、移动和穿凿城镇排水设施；  　　（四）擅自向城镇排水设施加压排放污水。  **第十四条**　排水户因发生事故或者其他突发事件，排放的污水可能危及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安全运行的，应当立即停止排放，采取措施消除危害，并按规定及时向城镇排水主管部门等有关部门报告。  **第十五条**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加强对排水户的排放口设置、连接管网、预处理设施和水质、水量监测设施建设和运行的指导和监督。  **第十六条**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将排水许可材料按户整理归档，对排水户档案实行信息化管理。  **第十七条**　城镇排水主管部门委托的具有计量认证资质的排水监测机构应当定期对排水户排放污水的水质、水量进行监测，建立排水监测档案。排水户应当接受监测，如实提供有关资料。  　列入重点排污单位名录的排水户，应当依法安装并保证水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正常运行。  　　列入重点排污单位名录的排水户安装的水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应当与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将监测数据与城镇排水主管部门实时共享。对未与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城镇排水主管部门已进行自动监测的，可以将监测数据与环境保护主管部门共享。  **第十八条**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依照法律法规和本办法的规定，对排水户排放污水的情况实施监督检查。实施监督检查时，有权采取下列措施：  （一）进入现场开展检查、监测；  （二）要求被监督检查的排水户出示排水许可证；  　　（三）查阅、复制有关文件和材料；  　　（四）要求被监督检查的单位和个人就有关问题做出说明；  　　（五）依法采取禁止排水户向城镇排水设施排放污水等措施，纠正违反有关法律、法规和本办法规定的行为。  　　被监督检查的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不得妨碍和阻挠依法进行的监督检查活动。  **第十九条**　城镇排水主管部门委托的专门机构，可以开展排水许可审查、档案管理、监督指导排水户排水行为等工作，并协助城镇排水主管部门对排水许可实施监督管理。  **第二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许可机关或者其上级行政机关，根据利害关系人的请求或者依据职权，可以撤销排水许可：  　　（一）城镇排水主管部门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作出准予排水许可决定的；  　　（二）超越法定职权作出准予排水许可决定的；  　　（三）违反法定程序作出准予排水许可决定的；  　　（四）对不符合许可条件的申请人作出准予排水许可决定的；  　　（五）依法可以撤销排水许可的其他情形。  　　排水户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排水许可的，应当予以撤销。  **第二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依法办理排水许可的注销手续：  （一）排水户依法终止的；  （二）排水许可依法被撤销、撤回，或者排水许可证被吊销的；  　　（三）排水许可证有效期满且未延续许可的；  　　（四）法律、法规规定的应当注销排水许可的其他情形。  **第二十二条**　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将监督检查的情况向社会公开。  　　城镇排水主管部门及其委托的专门机构、排水监测机构的工作人员对知悉的被监督检查单位和个人的技术和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第二十三条**　城镇排水主管部门实施排水许可不得收费。  　　城镇排水主管部门实施排水许可所需经费，应当列入城镇排水主管部门的预算，由本级财政予以保障，按照批准的预算予以核拨。  **第四章　法律责任**  **第二十四条**　城镇排水主管部门有下列情形之一的，由其上级行政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对不符合本规定条件的申请人准予排水许可的；  　　（二）对符合本规定条件的申请人不予核发排水许可证或者不在法定期限内作出准予许可决定的；  　　（三）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他人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的；  　　（四）泄露被监督检查单位和个人的技术或者商业秘密的；  　　（五）不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或者监督不力，造成严重后果的。  **第二十五条**　违反本办法规定，在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覆盖范围内，未按照国家有关规定将污水排入城镇排水设施，或者在雨水、污水分流地区将污水排入雨水管网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或者造成严重后果的，对单位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第二十六条**　违反本办法规定，排水户未取得排水许可，向城镇排水设施排放污水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采取治理措施，补办排水许可证，可以处50万元以下罚款；对列入重点排污单位名录的排水户，可以处3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七条**　排水户未按照排水许可证的要求，向城镇排水设施排放污水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改正，可以处5万元以下罚款；造成严重后果的，吊销排水许可证，并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对列入重点排污单位名录的排水户，处3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并将有关情况通知同级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向社会予以通报；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八条**　排水户名称、法定代表人等其他事项变更，未按本办法规定及时向城镇排水主管部门申请办理变更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3万元以下罚款。  **第二十九条**　排水户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排水许可的，可以处3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条**　违反本办法规定，排水户因发生事故或者其他突发事件，排放的污水可能危及城镇排水与污水处理设施安全运行，没有立即停止排放，未采取措施消除危害，或者并未按规定及时向城镇排水主管部门等有关部门报告的，城镇排水主管部门可以处3万元以下罚款。  **第三十一条**　违反本办法规定，从事危及城镇排水设施安全的活动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并给予警告；逾期不采取补救措施或者造成严重后果的，对单位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罚款，对个人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二条**　排水户违反本办法规定，拒不接受水质、水量监测或者妨碍、阻挠城镇排水主管部门依法监督检查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给予警告；情节严重的，处3万元以下罚款。  **第五章　附 则**  **第三十三条**　排水许可证由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制定格式，由省、自治区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和直辖市人民政府城镇排水主管部门组织印制。  　　排水许可申请表由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制定推荐格式，直辖市、市、县人民政府城镇排水主管部门可参照印制。  **第三十四条**　本办法自2015年3月1日起施行。《城市排水许可管理办法》（建设部令第152号）同时废止。 |